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76
----------	------

제출연월일: 2017. 2.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활동 지원을 위해 지원시설과 민간위탁 근거 조항 추가 및 지원시설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시설의 명칭과 위치 추가(안 제4조제1항)
- 나. 민간위탁을 위한 근거 조항 추가(안 제4조제3항)
- 다. 지원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조항 신설(안 제4조제5항)
- 라. 예산서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서 4개월 전으로 변경
(안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지방자치
법,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6. 12. 29. ~ 2017. 1.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동구”를 “서울특별시 성동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3조 중 “성동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운영 등)”을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시설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를 설립”을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로 하며, “있다”를 “있으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혁신센터는”을 “지원시설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설립된 혁신센터를”을 “설치된 지원시설을”로, “법인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를 “법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기관 등에”로, “있다”를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혁신센터를”을 “지원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전액 감면

2.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 감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감면

제6조의 제목 “(혁신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을 “(지원시설의 예산 및 결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혁신센터”를 “지원시설”로, “1개월”을 “4개월”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혁신센터”를 각각 “지원시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성동구 지원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4조 관련)

명 칭	위 치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6나길 22-11
파워스탠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63 (언더스탠드 예비뉴 내)

[별표 2]

성동구 지원시설(파워스탠드) 사용료(제4조 관련)

층별	시설명	사용료 (시간당)	비 고
1층	코워킹스페이스 (창업카페)	50,000원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2층	열린 회의실, 교육장	20,000원	
	작은 모임방	5,000원	
3층	다목적실	5,0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u>성동구</u>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과 같다.</p> <p style="margin-left: 20px;">1. ~ 6. (생략)</p> <p>제3조(책무) ① <u>성동구청장</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유치 및 지원 사업 등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p> <p>제4조(<u>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운영 등</u>)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등의 창업을 비롯한 경제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내 이용</p>	<p>제1조(목적) ----- ----- ----- ----- <u>서울</u> <u>특별시 성동구</u> ----- ----- ----- ----- -----.</p> <p>제2조(정의) ----- ----- <u>뜻은</u> ----- ----- -----.</p> <p style="margin-left: 20px;">1. ~ 6. (현행과 같음)</p> <p>제3조(책무) ① <u>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u>----- ----- ----- ----- -----.</p> <p>제4조(<u>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시설 운영 등</u>) ① ----- ----- -----</p>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혁신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혁신센터의 장은 제4조 제2항의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혁신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

⑤ 지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전액 감면
2.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 감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감면

제6조(지원시설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지원시설-----

- 4개월 -----
----- . <후단 삭제>

② 지원시설-----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혁신센터의 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
차대조표 등 회계 기록을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 동안 보관한다.

-----.

③ 지원시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변동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3. 미첨부 사유

-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부분은 없음

4. 작성자

- 성동구 지역경제과 조유현(연락처 2286-5476)

< 관 계 법 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26.]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이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1.>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6.21.>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7.12.>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6.21., 2014.7.7., 2016.7.12.>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6.7.12.>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2013.6.21., 2016.7.12.> [전문개정 2009.4.24.]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신설 2015.7.20.>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0.>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7.20.>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0., 2016.7.1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7., 2015.7.20.>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5.7.20.>[전문개정 2009.4.24.]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6.12.29.> [제목개정 2014.1.7]
-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1.7>
-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⑤ 일반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규정된 입찰 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6.12.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 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구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시설관리 사무 등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성동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성동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문화·도서관·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교육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근로자복지, 자활,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교통, 주차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13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17. 2. 28.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7. 2. 14.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2017. 2. 17.

다. 상정일자: 2017. 2. 24.

(제230회 임시회 개최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기획재정국장

나. 제안이유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활동 지원을 위해 지원시설과 민간위탁 근거 조항 추가 및 지원시설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시설의 명칭과 위치 추가(안 제4조제1항)

나. 민간위탁을 위한 근거 조항 추가(안 제4조제3항)

다. 지원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조항 신설(안 제4조제5항)

라. 예산서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서 4개월 전으로 변경
(안 제6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6. 12. 29. ~ 2017. 1.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활동 지원 및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창업지원 시설 및 민간위탁 근거 조항을 추가하고, 파워스탠드의 합리적 시설 운영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시설의 적극적 개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 됨.

6. 질의 및 답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